

의안
번호

38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소형준 의원 외 7명

나. 의안번호 : 제389호

다. 제출일자 : 2024. 11. 06.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행되어, 중단되었던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을 셋째 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10조)
- 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정비(안 제21조제1항·제2항)
- 다. 출산축하금 지원금 지급 기한 조정(안 제23조제5항)
- 라. 홍보물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5조제3항·제4항 신설)
- 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 라.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 이용권 사업’이 시행되어 중단되었던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셋째 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초 저출산 시대(합계출산율 2023년 전국 0.72명, 서울시 0.55명, 성북구 0.59명)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연도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2021년~2023년)〉

(단위:명)

구분	연도	출생아수 (증감률)	합계출산율 (증감률)	비고
성북구	2021	1,939 (-5.0%)	0.656 (-3.0%)	서울시 자치구 9위
	2022	1,896 (-2.2%)	0.649 (-1.1%)	서울시 자치구 7위
	2023	1,695 (-10.6%)	0.588 (-9.4%)	서울시 자치구 7위
서울시	2021	45,531 (-4.0%)	0.626 (-2.5%)	
	2022	42,602 (-6.4%)	0.593 (-5.3%)	
	2023	39,456 (-7.4%)	0.552 (-6.9%)	
전국	2021	260,562 (-4.3%)	0.808 (-3.5%)	
	2022	249,186 (-4.4%)	0.778 (-3.7%)	
	2023	230,028 (-7.8%)	0.721 (-7.3%)	

출처 : 통계청

〈성북구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2021년~2023년)〉

(단위:명)

구 분		2021	2022	2023
성북구	출생아수	1,939	1,896	1,695
	첫째아	1,144 (-5.9%)	1,270 (+11%)	1,066 (-16%)
	둘째아	675 (-4.3%)	534 (-20.9%)	517 (-4%)
	셋째아 이상	120 (+0.8%)	92 (-23.3%)	112 (+22%)

- 2023년 첫째아는 전년보다 16% 감소, 둘째아는 전년보다 4% 감소, 셋째아 이상은 전년보다 22% 증가

□ 주요내용

○ 안 제10조(구성)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 추가

현행 조례상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부서장 및 교육·일자리·주거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되어 있으나 ‘위탁사무 센터장’을 추가함.

‘위탁사무 센터장’은 대상자가 불명확하고, 현행 조례상 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6명이 당연직으로 있어 당연직 비율이 큼. 위원회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당연직 추가는 검토가 필요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구성) ①·② (생략)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분야 관련 <u>부서장</u> 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 ----- ----- 부서장, <u>위탁사무 센터장</u> 으로 ----- -----.

○ 안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 정비

①항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2년 국가 보조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대상자 중복지원으로 중단되었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재지원하려는 것임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지원금은 삭제하고,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15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셋째이상 다자녀 출생시 차등하여 지원하고자 규정을 마련함

②항 출생자녀의 순서에서 신생아의 출생당시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하지 않음”에서 “산입”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 보조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기준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 자치구별 출산축하금 지원구 8개구, 첫째부터 지원 4개구,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4개구임

※ 자치구비 평균지원금 : 셋째아 178만원(최소 60만원, 최대 300만원)

넷째아 325만원(최소100만원,최대500만원)

다섯째이상 462만원(최소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	-----
1. 첫째 자녀	20만원	<삭 제>		
2. 둘째 자녀	40만원	<삭 제>		
3. 셋째 자녀	80만원	3. -----	100만원	
4. 넷째 자녀	100만원	4. -----	15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150만원	5. -----	200만원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생아의 출생 당시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하지 않음	3. ----- ----- 산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제25조(교육 및 홍보)제③항④항 인식개선 등 홍보물품 지급 규정 신설**
 기존 제25조제①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
 해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홍보물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출산가정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기준으 로 한다.

- **안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다자녀 저소득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자녀 저소득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양육 부담이 크며, 이를 지원하는 조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명시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에 부합 하므로, 본 조항의 신설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가정에(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1: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 중이나 본인 부담액이 시간당 1,163원~5,306원 유형별로 차등발생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자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으며, 개정안의 목적과 필요성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10조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으로 ‘위탁사무 센터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당연직 위원 추가 안은 검토가 필요함
- 출산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칙을 신설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부칙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 용한다.